

노인학대 예방 공익브랜드

나비새김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577-1389, 110, 129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노인복지시설 담당 공무원,  
지역보건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교재



발행처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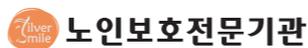
발행인 이기민

편집인 이현민, 이해영, 김재인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76가길 14, 4층

전화 02-3667-1389 팩스 02-2634-5023

홈페이지 [www.noinboho.or.kr](http://www.noinboho.or.kr) 인쇄발행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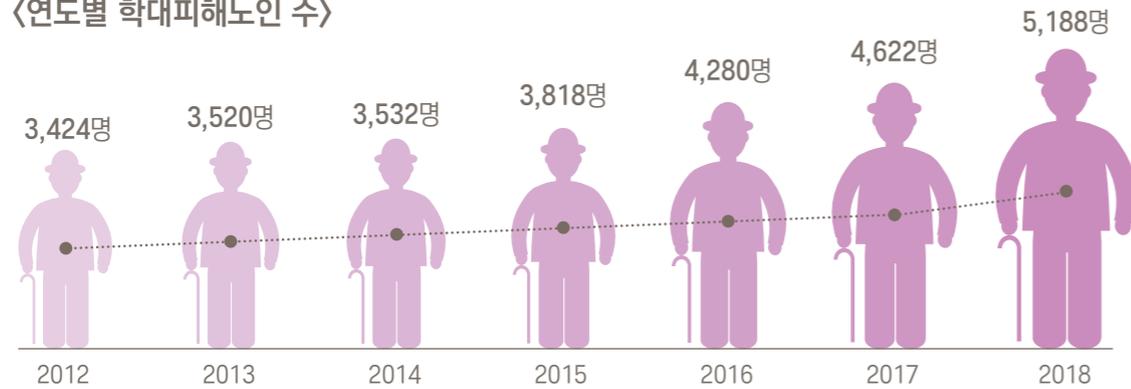


# 01 노인학대 현황

## Q 노인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노인학대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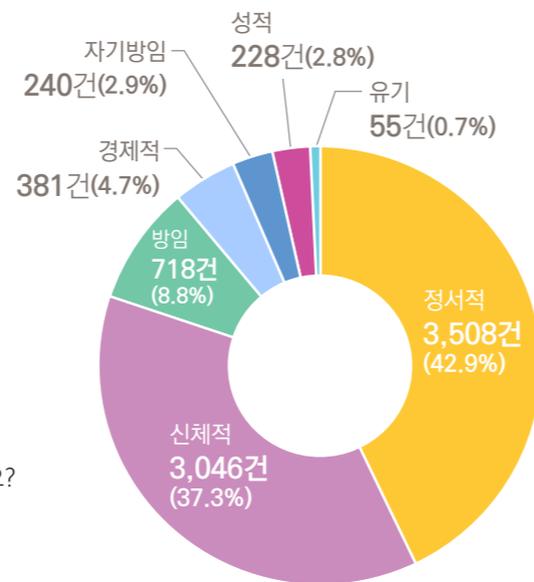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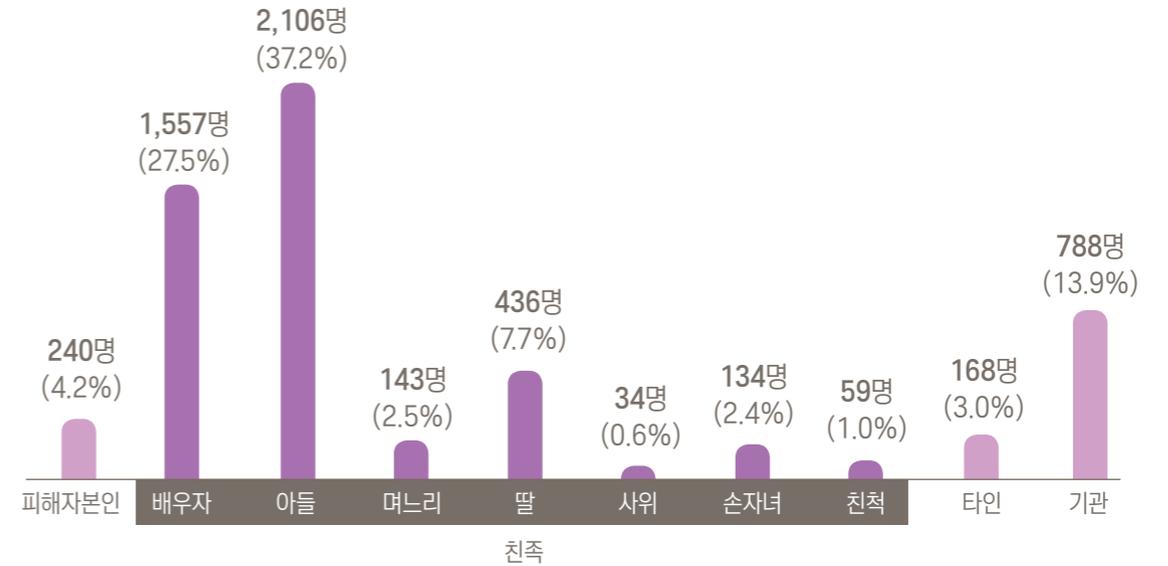
〈노인학대 유형〉

**노인 10명 중 1명은**  
지금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학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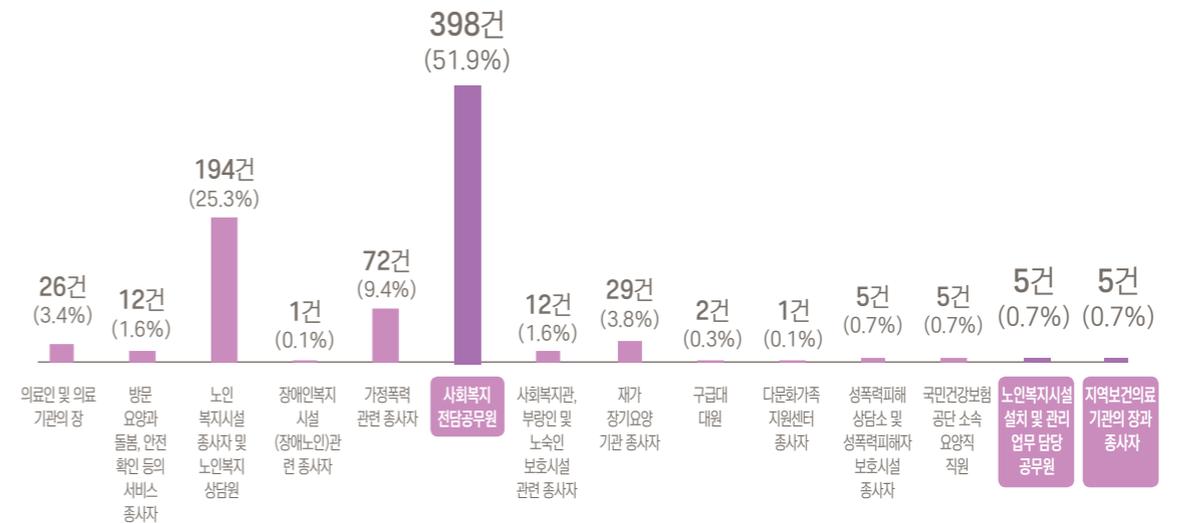
- 오늘 하루, 노인학대가 의심스러웠던 적이 있었나요?
- ‘어쩌다 한 번 일어난 일이겠지...’라는 생각에  
모른척 하지는 않았나요?
- 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이 노인학대에 해당하지는 않았나요?



〈2018년 노인학대 행위자 유형〉 총 5,665명



〈신고의무자 직군별 학대판정 신고 건수〉



※ 노인복지시설 설치·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2018년 9월 14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으로 새롭게 추가되었기에 직군별 신고 건수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9).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02 나는 신고의무자



## Q 제가 정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인가요?

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제5호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 Q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네!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만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2호).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노인학대가 오랜기간 반복되고, 점차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 Q 신분 노출 걱정 때문에 신고가 꺼려지는데...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네! 노인복지법에서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이를 위반하여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제4호).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03 노인학대 알아보기



## 노인학대의 특성

- ① 지속성 : 오랜 기간 동안 학대행위가 계속됨
- ② 복합성 : 가족 및 관계 내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함
- ③ 반복성 :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하여 발생함
- ④ 은폐성 : 묵인되고 은폐되며,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음 “그래도 내 자식”

##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예) 신체 구타 · 억압 · 위협, 밀치거나 넘어뜨림, 강제로 기동, 이동을 통제함, 생존유지를 위한 식사 · 장치 · 약물 등을 단절함, 약물 및 주사 강제 복용 · 투입, 강제노동 등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헐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예) 반말, 눈을 맞추지 않음, 욕설 등

# 04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와 예측징후



##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예) 성관계 강요 및 시도,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성폭행,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 등



##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예) 노인의 동장을 동의없이 갈취,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노인의 재산사용을 통제함 등



## 방임(자기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에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예) 노인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음, 노인이 끼니를 계속 걸러 야웜 등(자기방임: 스스로 식사거부, 비위생적인 집안환경 등)



##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예) 노인의 시설입소 후 보호자와 연락두절, 낯선장소에 버림 등

##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 예측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및 부상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 또는 머리 부분의 출혈 흔적
-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및 영양부족, 체중감소
- 묵인 흔적 또는 상처
-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증세가 심함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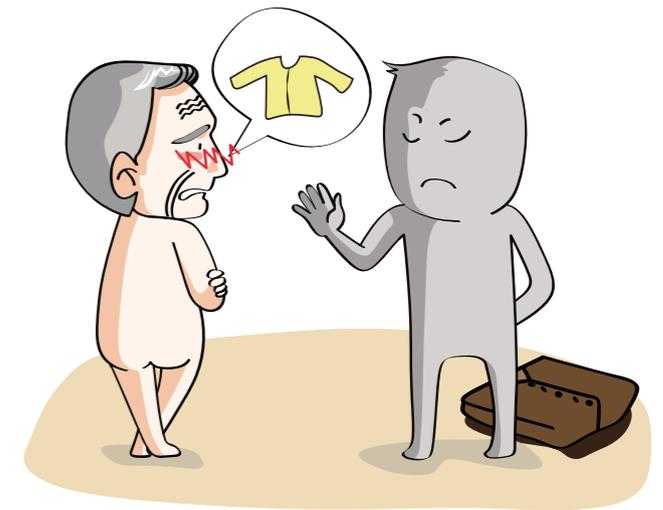
### 예측징후

- 눈물을 머금거나 우는 모습
- 무반응 또는 무표정한 모습
-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
- 흥분 또는 화가 난 분노의 모습
- 잠을 못 자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모습
- 극단적인 행동 또는 히스테리를 보임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함
- 가족 또는 보호자 등과 대화가 거의 없거나 눈치를 봄
- 사람을 만나거나, 외부활동을 피하거나 꺼림
- 다툼, 욕설, 큰소리가 자주 들림



##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예측징후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 성기부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신체의 주요 부분을 노출시킴
- 성병에 걸림
- 분노 또는 수치심
-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예측징후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됨
- 노인을 강요하거나 허락 없이 재산관련 서류를 처리함
- 노인부양 전제로 재산을 증여했으나 부양하지 않음
-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
- 공적부조(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 기초노령연금 등)를 가로챌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 개인 귀중품이 없어짐
- 은행계좌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음
- 체납된 공과금 및 고지서가 발견됨
- 노인의 임금이 체불됨



## 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 예측징후

- 대소변 냄새, 악취,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방치된 상태
- 머리, 수염, 목욕, 손톱, 옷 입기 등의 신변처리가 안된 상태
- 노인의 건강·주변 환경의 안전위험 증후
- 의복 및 이불 등의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주거환경
- 식사를 거르는 등의 영양실조나 탈수상태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활비 지원이 거의 없음
- 노인 스스로 의료적 처치, 의식주를 거부하여 생명이 위험함(자기방임)

# 05 노인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안내

##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예측징후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음
- 노인이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데 버려져 있음
-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
-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을 시설 및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 두절

## 사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장의 신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을 지원하고자 자택을 방문하였다. 72세 어르신은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아들을 무서워하고 초조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공무원은 **아들에 의한 학대가 의심된다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하였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학대피해 노인을 쉼터에 입소** 조치하였다.

학대피해노인이 복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병원에 내원**한 결과 대장암 3기 진단을 받게 되었다. 이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피해노인에게 **행정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긴급생활물품을 지원**하는 동시에 **유관기관 의료비용 지원**을 신청하여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학대행위자**인 아들은 알코올중독이 의심됨에 따라 **정신건강센터와 협조**하여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였다.

**학대피해노인**은 건강을 회복하여 퇴원 후 **지정양로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학대피해노인이 시설에 원만히 적응하여 안정된 삶을 보내고 있음을 확인하고 사례를 종결하였다.





04

## 학대행위자 상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학대 사례 개입 시, 학대피해노인 상담 뿐 아니라 학대 행위자와 그 가족을 위한 개입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 학대행위자의 학대유발 요인을 파악하고, 감소·제거 하기 위해 상담을 통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진행합니다. 또한 노인 학대행위로 상담 및 교육, 심리 치료 등의 권고를 받은 경우, 학대행위자의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39조의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06

## 이혼절차 정보제공(가정법률상담소)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할 때에는 가정법률 상담소 등을 통하여 법적 이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진행합니다.

05

## 법률서비스 지원·연계

학대행위자와의 분리를 위한 법률서비스(법률상담연결, 소송지원, 고소고발) 및 가정법률 상담소와 연계 한 이혼절차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시설 및 의료시설 내 학대 행위로 피해를 받은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률 서비스 지원 및 관내 행정기관의 협조를 통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01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 34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18개의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경우, 건강검진 등의 절차를 거쳐 4개월, 최장 6개월 간 쉼터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단, 치매 등의 질환으로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거나, 학대피해노인이 아닌 노숙인의 경우 입소가 불가능합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학대피해노인 쉼터생활 지원, 치유 프로그램 제공,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해 학대 행위자 등에게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경우, 쉼터에 입소하지 않더라도 상담 및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03

## 중독, 신체·정신적 문제 등 치료 연계

학대사례 개입 시 학대피해노인 또는 학대행위자에게 발생하는 중독 및 신체, 정신 질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치료, 방문간호, 의료기관 입원 및 입원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2

## 학대피해노인보호를 위한 지정 양로시설 입소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쉼터 보호 후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학대피해노인의 경우 학대 피해노인보호 지정양로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입소의뢰된 학대피해노인은, 지방자치단체와 양로시설 간 협의를 통해, 입소여부 판정 후 입소가 가능합니다. 양로시설에 입소하더라도, 필요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통해 전문 심리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06 노인학대 관련 행정처분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고접수

지역사회내 유관기관이나, 민원인 또는 담당 공무원이 장기요양기관의 학대의심사례 접수 및 발견시에는 해당 기관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의 안전확보 및 심리, 정서적 안정 등을 위해 지체없이 관할지역내 노인 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노인, 그 보호자 또는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노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서 제출)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7항).

## 현장조사

###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사법경찰관

-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을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1항).
-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sup>1)</sup>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1) 증표는 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 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발행한 노인학대조사원증 등



### ○ 공무원

- 현장조사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과 시설을 방문한 관계 공무원은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조사 또는 질문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 조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 [현장조사 시 권한 증표 제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 담당자, 관계 법령, 제출자료, 그 밖에 현장 조사 관련 필요사항 기재된 서류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3항).

## 사전통지 및 청문

-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제6호).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즉,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노인학대로 해당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벌내용, 해당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시설장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 및 그 밖에 다른 시설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8 제1항).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횡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07 행정처분 기준



## ○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22조, 27조 등)

-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시 공무원은 해당 시설에 처분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청취를 하여야 합니다. 행정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침익적 행정행위 시, 미리 ① 처분의 제목, ②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③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④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⑤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⑥ 의견제출기한, ⑦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 청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업무정지, 지정취소, 폐쇄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3조제1~2호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노인학대를 이유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3조). 한편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청문 시작 **10일 전**, 위 각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의 **당사자 등은** 그 지정 취소 처분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장기요양기관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청문 주재 및 과정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절차법 제28조와 30조를 참고**하여 진행하고, 청문 후 그 결과를 해당 **업무과 및 법무팀**이 확인 및 검토 종료하여 **행정처분을 확정**합니다. 처분 내용에 따른 향후 일정은 담당 과에서 장기요양기관 담당자와 조율하여 진행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조치 시 입소자 조치계획서(전원 조치 등) 제출을 요청**합니다. 위 시설이 입소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 업무담당과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행정처분 등 결과 통보**를 하고 **입소자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에 근거하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2019년 12월 12일부터 아래의 행정처분 기준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장기요양기관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처분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하나로 통합하였으며, 경제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발생 시에도 행정처분을 조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2019. 6. 12. / 시행일 2019. 12. 12.)

근거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제37조 제1항제6호	13)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지정취소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Q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요양병원에서 학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병원 혹은 요양병원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하더라도 노인복지시설에 준하여 사례개입을 진행해야 하며, 이때 해당 **요양병원을 관리·감독하는 보건소 공무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병원 및 요양병원은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으나, 일정 시간 이상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를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노인, 그 보호자 또는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 08 노인학대 관련 행정처분 판례

## 사건개요

행정처분 대상은 ○○ ○○면 ○○길 ○○소재 노인복지시설(상호: ○○)을 운영하는 자이다. ○○시는 2016. 3. 9. ○○도○○으로부터 청문절차를 거친 후, 2016. 5. 9. 「노인복지법」 제39조9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 신고접수

○○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노인(▼▼▼)이 골절 진단을 받은 상황에서 해당 시설의 적극적인 의료적 보호를 제공 받지 못하는 등의 노인학대 신고사례로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사례가 이관 접수 되었다.

## 현장조사

2016.1.19. ○○시는 ○○노인복지시설의 노인학대 사례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제 39조의6 및 제39조의7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 하였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현장조사 결과와 자체사례회 및 사례판정위원회 등을 실시 하고 사례판정 결과(방임학대)를 ○○시에 통보하였다. (2016.3.9.)

※ 조사내용 : 입소노인(▼▼▼)이 골절 진단을 받은 상황에서 요양시설로부터 적극적인 의료 제공을 받아야 하나 약 1주일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의료적 처치 없이 시설에서 관리 사실이 확인 되었음.



- 「노인복지법」 39조의9제3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6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 2. 개별기준 가.



## 사전통지(청문)

○○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 결과를 참고하여 ○○ 노인복지시설에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실시를 통보하였고 ○○시설의 장은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였다.

※ 예정된 처분 :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3개월

※ 의견진술 내용 : 입소노인(▼▼▼)의 보호자 등이 금전(위로금)을 목적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고소, 고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절대 방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며, 이에대해 최소를 요구함

## 행정처분

○○시는 2016.5.9. ○○시설의 장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위반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 가. 관계 법령의 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 2016.6.30., 법률 제13647호, 2015.12.29., 일부개정]
-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시행 2016.7.1. 보건복지부령 제426호, 2016.7.1., 일부개정]
-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2. 개별기준
- 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기준(법 제37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위반행위	해당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7)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법 제37조 제1항제6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노인복지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646호, 2015.12.29., 일부개정]
  - 제39조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나. 판단

청구인은 '어르신의 보호자들이 금전(위로금)을 목적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고소, 고발을 진행하고 있고 있는데, 청구인은 절대 방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한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두31635 판결 참조)

살피건대,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노인에게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노인학대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최초 방문 병원 전문의의 소견 및 피청구인이 2016. 1. 19. OO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을 방문 상담한 내용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을 노인학대(방임학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의 이러한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은 없어 보인다.

아울러, 청구인이 2015. 12. 22. 최초 병원(○○) 의사 소견(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큰 병원 권유) 시부터 2015. 12. 28.까지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대상 어르신의 사망원인의 직접사인이 '우측대퇴골전자간골절 후유증'인 점,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노인에게 적절한 치료·요양을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기본목적에 비추어 볼 때, 노인 학대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목적이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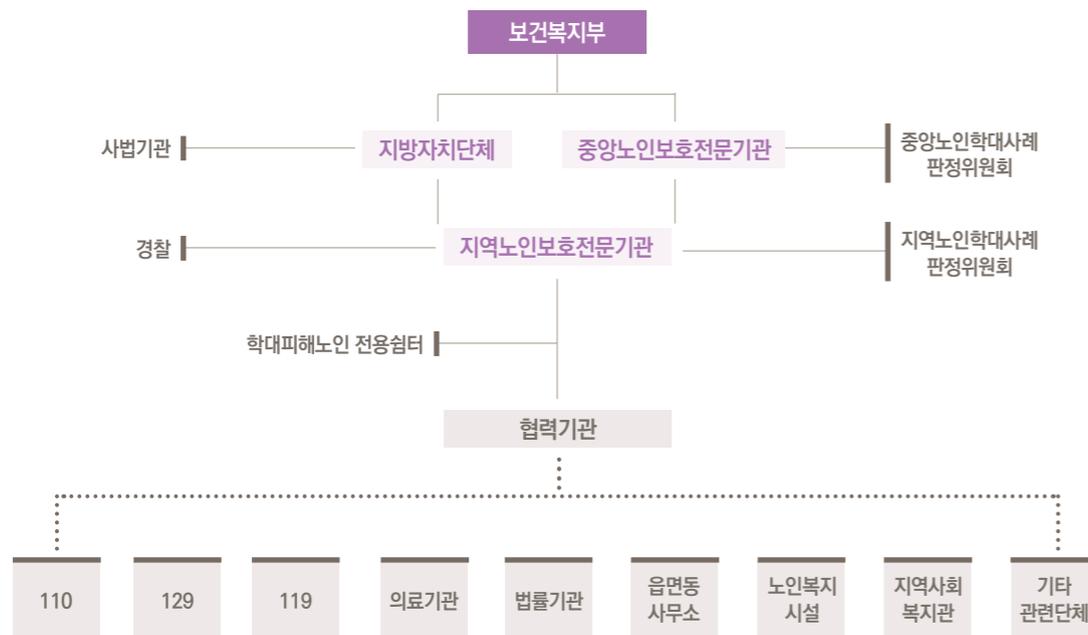
따라서 피청구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 2. 개별기준 가. 7)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장기요양기간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아니하다.

# 09 노인보호전문기관 소개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근거하여 전국 시·도에서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권의 향상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노인학대예방사업 체계도



##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내용



**상담**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사업**

- 전문상담
- 일시보호서비스, 의료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법률지원 연계



**교육**

**노인학대예방 교육사업**

- 노인학대 예방교육
- 노인인권 교육



**홍보**

**홍보사업**

- 이동상담 실시, 언론홍보
- 학술행사, 캠페인
- 카툰 및 사진전시회
- 노인학대예방의 날(6.15) 기념행사



**협력체계구축**

**협력체계 구축사업**

- 중앙·지역노인학대사례 판정위원회 운영
-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 후원, 자원봉사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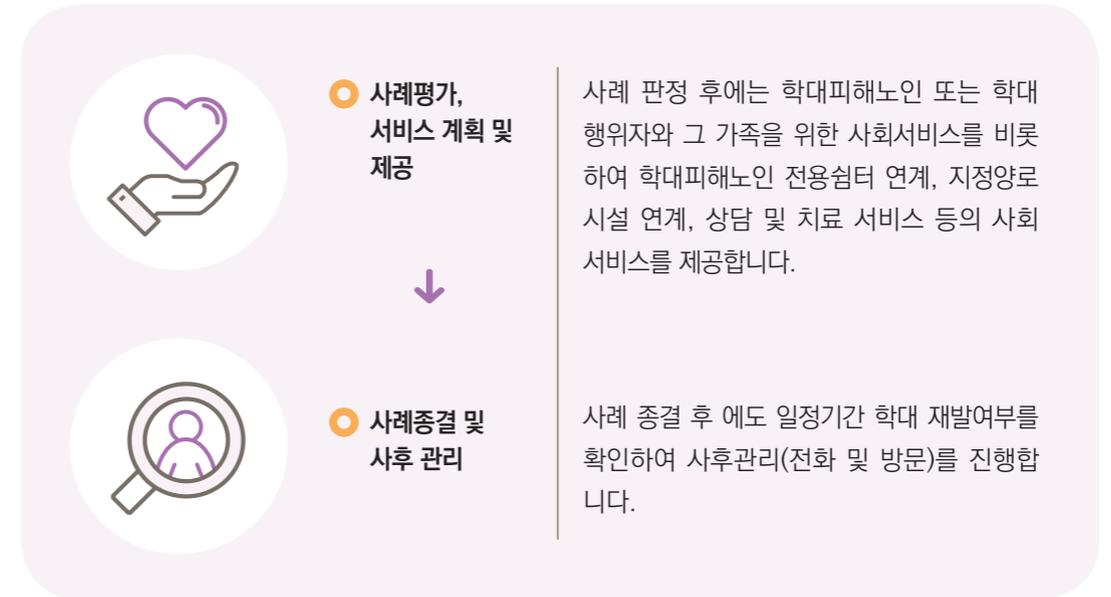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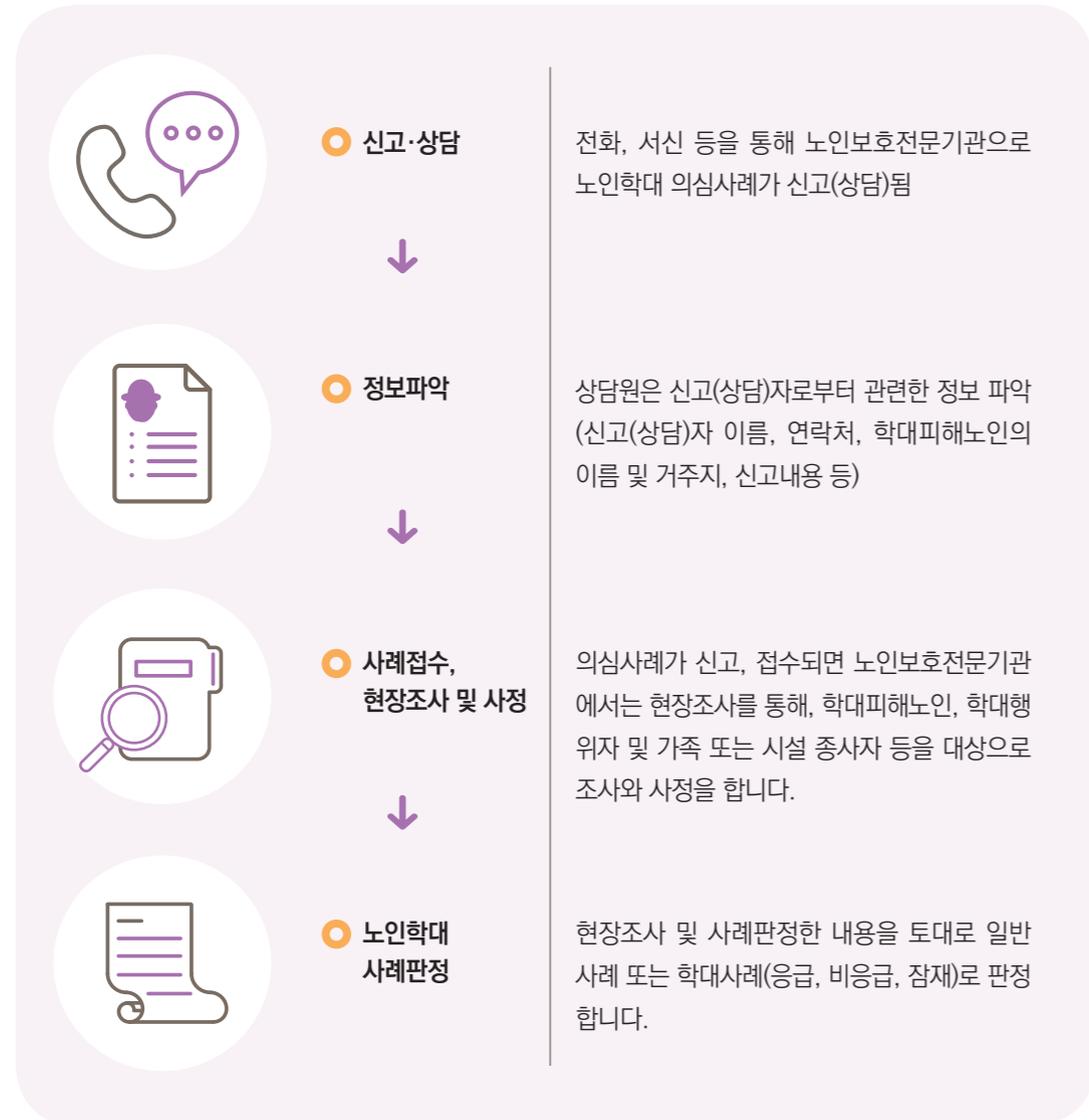


**인권보호**

**노인인권 보호사업**

- 노인인식 개선사업
- 효행교육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과정



1577-1389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관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학대피해노인의 거주지를 확인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직통번호로 신고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정부민원 안내콜센터 110**으로 신고하는 경우, 학대피해노인과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됩니다.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할 지역 및 전화번호는 31쪽 참고)

# 10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소개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근거하여 보호 및 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만 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을 대상으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입소대상

만 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으로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입소기간

4개월 이내(학대재발의 우려 등 재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하여 연간 총 6개월 이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4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퇴소 후 원가정 복귀 어려운 학대피해노인은  
지정된 전국 양로시설로 연계하여 입소 지원\*

\* 양로시설 지정, 운영, 연계에 관한 사항

-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에서는 학대피해노인이 퇴소 이후 입소 가능한 양로시설을 지정하거나 운영
- 학대피해노인의 입소의뢰를 받은 시·군·구는 즉시 지정된 양로시설로 입소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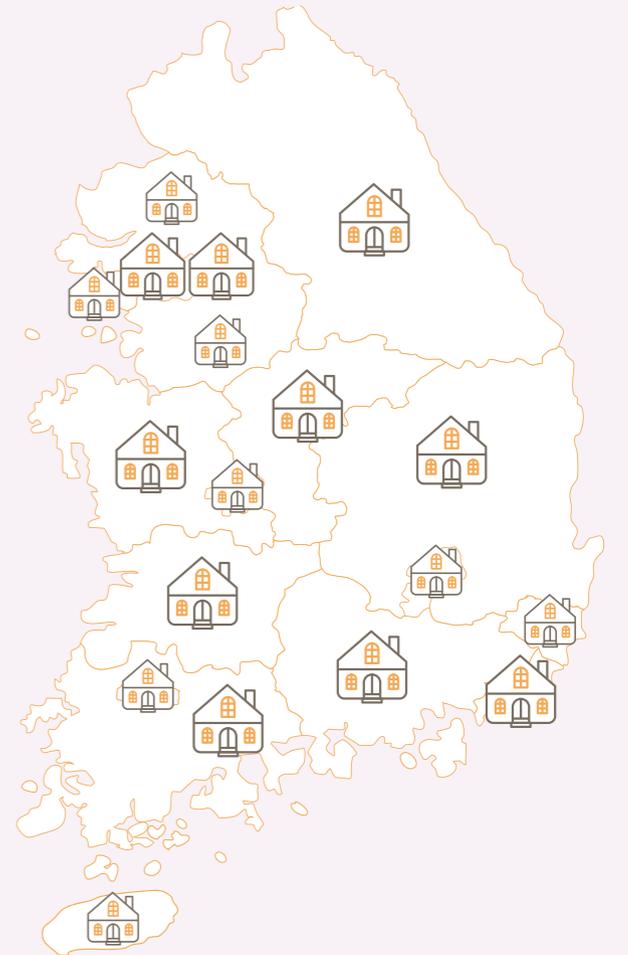
### 서비스내용

- 1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 2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 3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 4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광역시·도에 18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쉼터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 진행 및 학대행위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노인학대 처벌기준



법률	내용	처벌
벌칙 <b>제55조의2</b>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 <b>제55조의3</b>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신설)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상해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사망 시)
벌칙 <b>제55조의4</b>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노인학대 금지행위 관련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 <b>제57조</b>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b>제61조의2</b>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 노인학대 법적 처벌 기준 : 노인복지법 외 타 법률 적용 가능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 종료 또는 집행면제 후 10년까지의 기간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



# 전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안내



(2019. 10. 기준)

시도	전국기관	관할지역	전화번호
중앙		-	02)3667-1389
서울	서울남부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	02)3472-1389
	서울북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광진구	02)921-1389
부산	서울서부	종로구, 중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02)3157-6389
	부산동부	중구, 서구, 동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영도구, 남구, 강서구	051)468-8850
대구	부산서부*	연제구, 수영구, 해운대구, 동래구, 금정구, 부산진구, 기장군	051)867-9119
	대구남부*	남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053)472-1389
인천	대구북부	중구, 동구, 서구, 북구	053)357-1389
	인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032)426-8792
광주	인천서부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032)569-0533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062)655-4155
대전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042)472-1389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052)265-1389
경기	경기남부	성남시(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용인시(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이천시, 광주시, 하남시, 의왕시, 과천시, 여주군, 양평군	031)736-1389
	경기북부*	고양시(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의정부시, 남양주시, 파주시, 구리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031)821-1461
	경기서부*	안양시(만안구, 동안구), 부천시(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032)683-1389
강원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안산시(상록구, 단원구),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031)268-1389
	강원*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033)253-1389
충북	강원동부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033)655-1389
	강원남부	원주시,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033)744-1389
충남	충북*	청주시,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043)259-8120
	충북북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043)846-1380
전북	충남*	천안시(동남구, 서북구), 아산시, 서산시, 연기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041)534-1389
	충남남부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공주시	041)734-1389
전남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덕진구),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063)273-1389
	전북서부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063)443-1389
경북	전남동부*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장성군, 장흥군, 화순군	061)742-3071
	전남서부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영광군, 함평군,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신안군, 나주시	061)281-2391
경남	경북*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영덕군, 청송군, 청도군, 울진군, 울릉군	054)248-1389
	경북서북부*	영주시, 문경시, 안동시, 상주시, 예천군, 영양군, 의성군, 봉화군	054)655-1389
	경북서남부	구미시, 김천시, 경산시, 성주군, 고령군, 칠곡군, 군위군	054)436-1390
제주	경남*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창원시(진해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성산구, 의창구)	055)222-1389
	경남서부	진주시, 사천시,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	055)754-1389
제주	제주*	제주시	064)757-3400
	서귀포시	서귀포시	064)763-1999

\* 표시된 기관에서 센터 운영